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한 것이다.

제2조(상근기간) 박사과정 입학생은 최소 4학기 이상 약학대학에 상근(常勤)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경우에는 대학원과정 5학기부터 최소 4학기를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상근인정) 상근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비치된 등교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1학기에 90일 이상 등교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를 상근으로 인정한다. 단, 서울대학교내 타 기관으로의 상근은 지도교수가 그 기관의 겸직교수일 경우 등교부에 서명 없이 상근으로 인정된다.

제4조(비상근인정)박사과정 입학생으로 최소 3년 이상 해당 근무처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상근(非常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경우에는 비상근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논문제출 최소기간)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한 최소기간은 학위취득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과 같다.

(1) 박사과정 입학생 : 상근(常勤) : 3년
비상근(非常勤) : 5년
(2)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 석사과정 포함 4년

제6조(SCI 논문게재)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게재' 또는 '게재수락서'를 받은 SCI(E) 학술지 논문이 있어야 하며, 그 제출 기한은 종심전까지로 한다.

(1) 상근 : 1편(JCR 세부분류 체계에서 IF 상위 20% 이내) 또는
2편(JCR 세부분류 체계에서 IF 상위 50% 이내)
(2) 비상근 : 2편(JCR 세부분류 체계에서 IF 상위 20% 이내) 또는
3편(JCR 세부분류 체계에서 IF 상위 50% 이내)

제7조(SCI 논문 요건) 상기 논문은 박사학위과정 중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하며, 한 편 이상은 직접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상기 논문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2) 지도교수가 제1저자 및 교신저자이고 논문제출자가 제2저자

만일, ①n명 이상이 동등하게 제1저자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1/n 편으로 인정한다. ②교신저자의 수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n명일 경우, 그 논문은 1/n편으로 간주한다. 단 SCI IF가 10 이상일 경우 교신저자가 2인이면 1편으로 인정한다. ③ 비상근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와 근무처 책임자가 동시에 교신저자가 될 경우에는 1편으로 인정한다. ④정년퇴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전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논문도 인정한다.

제8조(논문제출기한)① 종심 전까지 게재수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기간 연장 신청자가 다음 학기 종심 전까지 게재수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사위원회 박사논문발표 대상자 재심의에 들어간다.

제9조(적용시점) 이 내규는 2012년 3월에 박사과정 1학기 및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본 내규 제6조 또는 제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학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1998. 8. 31 학사위원회 제정)
(2000. 7. 10 학사위원회 개정)
(2000. 10. 12 학사위원회 개정)
(2002. 4. 14 학사위원회 개정)
(2004. 9. 22 학사위원회 개정)
(2010. 5. 31 학사위원회 개정)
(2010. 6. 10 학사위원회 개정)
(2012. 2. 23 학사위원회 개정)